

#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년월일 : 2003. 9. 29

제 출 자 : 정진항 의원 외 6 인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 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체의 부자유, 노약, 가정환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계층에 대하여 생업을 지원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장은 공공시설물에 자판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1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자격 및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모·부자세대에 한함(안 제4조).
- 라.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계약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보다 우선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우선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5조).
- 마.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 2급 이상인 자는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 바. 계약위반, 자동판매기 관리 태만, 사망, 공익상 필요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9조·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5조·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 이라한다)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월 전에 이를 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②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 설치 계약 신청서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시장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계약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은 계약만료기간까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3. 10. 6.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9.29, 정진항의원외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3. 9.29.
- 다. 상 정 일 자 : 제1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0.6)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항의원)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 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체의 부자유, 노약,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계층에 대하여 생업을 지원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장은 공공시설물에 자판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1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자격 및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모·부자세대에 한함(안 제4조).
- 라.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계약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보다 우선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우선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5조).
- 마.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 2급 이상인 자는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 바. 계약위반, 자동판매기 관리 태만, 사망, 공익상 필요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III.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본 조례안은 정진항의원의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계층에 대하여 생업을 지원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매점의 경우는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허가 또는 위탁토록 하고,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1월전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자격 및 신청대상자는 20세이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부자 세대로 한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함.

또한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장애인 2급이상인 자는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 복지법에 우선 반영토록 근거규정에 의거 조례로 명확히 하여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운영자의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